

전북개발공사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

2022. 8.31.



법 제9조 제1항 제1호	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(국회규칙·대법원규칙·헌법재판소규칙·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·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)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----------------------	--

부서명	소관사항	비공개 대상 정보
공통사항	비밀정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의 타인에게 누설(국세기본법 제81조의10) -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(「변호사법」 제26조,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52조의6)
	민원사무	○ 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 중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
	통계 기초자료	○ 「통계법」 제33조에 의하여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
	금융 거래자료	○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, 금융 거래자료. 다만,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
	기타	○ 기타 법률의 취지,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등

법 제9조 제1항 제2호	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----------------------	--

부서명	소관사항	비공개 대상 정보
공통	비밀취급 관련정보	○ 보안정책, 을지연습, 직장예비군·민방위대 편성표, 비밀취급인가자 명단, 보안정책 등 비밀·대외비 관련 자료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
	비공개처리	○ 국가안보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
건축사업파트 보상분양파트	사업장	○ 군시설 건설공사(건축설계, 구조설계 및 구조계산서 등) 및 보상관련 정보
정보화추진TF	정보보안 정보	○ 정보통신망 구성도, 정보보호시스템 현황,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·사이버 테러 등 공사 경영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

법 제9조 제1항 제3호	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부 서 명	소관사항	비공개 대상 정보
공통사항	수사관련 정보	○ 위법,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, 피의자, 참고인
	국민보호	○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 - 방재, 방법에 방해가 되는 정보, 사람의 생명, 생활,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-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
보상분양파트	보상관련 정보	○ 보상에 관한 사항(보상가액, 보상물건, 보상금수령자 등) ※ 단, 보상 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.
인사총무파트	인감 및 직인 관리	○ 인감 및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·변조,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
자산운영파트 건축사업파트 주거복지파트	건축물 관리	○ 집합건물이나 관공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시설의 설계도면(단면도, 입면도, 구조도, 설비도 등) ○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, 위험물의 저장위치,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·구조·경비에 관한 정보

법 제9조 제1항 제4호	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(矯正)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부 서 명	소관사항	비공개 대상 정보
공통사항	소송 정보	○ 재판과 관련된 소장, 답변서, 판결전 재판기록,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○ 진행중인 재판과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정보 ○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범죄사실을 위한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등 ○ 「형사소송법」 제47조에 의한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

<p>법 제9조 제1항 제6호</p>	<p>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</p> <p>※ 다만,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.</p> <p>가.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</p> <p>나.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</p> <p>다.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</p> <p>라.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·직위</p> <p>마.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·직업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부서명	소관사항	비공개 대상 정보
공통사항	정보공개 및 민원사무처리 정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진정·탄원·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.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. 다만, 당해 민원인이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.
	개인정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. ※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(부동산 등기 부동산) -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(심의회 등 위원명부, 수상자 명단) -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(확정판결 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) ※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「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
인사총무파트	인사 관련 정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사교류 신청, 채용후보자 명부, 교육훈련관리, 징계심의·의결·결정통지, 신원조사,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·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원의 명예·신용·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. 다만,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.
	직원상훈·교육·시험 관련 정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각종 시험원서·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·학력·주소 등 개인정보

부 서 명	소관사항	비공개 대상 정보
	직원 정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특정 직원의 집 주소· 집 전화번호· 학력· 주민등록번호· 사회 경력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. 다만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법 제9조 제1항 제7호</p>	<p>법인·단체 또는 개인(이하 "법인등"이라 한다)의 경영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</p> <p>※ 다만,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.</p> <p>가.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(危害)로부터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</p> <p>나. 위법·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</p>
---	--

부 서 명	소관사항	비공개 대상 정보
공통사항	영업수행 관련 정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영업비밀 사항에 해당되는 정보 - 중장기 재무계획, 목표손익 내부평가자료 및 당해 연도 목표손익 부여자료, PMS 정기 추정자료 등 손익추정 관련자료 - 택지개발사업 등 공사가 추진하는 각종사업계획, 타당성 검토 및 사업분석 등의 자료와 각종 협약서(LOI, MOU 분협약서 등) - 주택·대지·복리시설의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원가관리(준공 원가) 및 사업성 분석에 관한 정보 - 용지보상 관련 내부 방침 - 용지공급 관련 지침 또는 내부 방침 - 조성원가 산정 세부내역, 제비용률 및 할인율 산정내역, 수지 분석자료. 단, 조성공개 공개대상 사업지구의 공개대상항목은 비공개대상에서 제외하며, 그 외 사업지구도 이를 준용함 - 각종 용역·공사관련 발주서류, 착수서류, 기성서류, 설계변경, 준공서류 - 입찰지정(예정) 업체의 경영내용 및 영업관련 정보, 선정관련 제출자료(제안서 평가 등)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, 기술평가 결과, 과업수행 결과 - 턴키(대안)입찰공사 설계평가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및 평가위원 명단 - 친환경 건축물인정 신청자료 및 인정평가 심의내용, 주택성능 인정신청 및 인정평가, 심의내용에 관련된 정보 - 위탁연구 수행시 위탁기관으로부터 받은 각종 관련된 정보 - 주택시장 정책, 동향등 마케팅 조사, 분석 등에 관련된 정보와 판매촉진 및 홍보전략 관련 정보,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업체가 제출한 영업관련 정보, 심사서류 및 심사 평가 결과

부서명	소관사항	비공개 대상 정보
		<p>등에 관한 정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 및 증빙서류 (사장 또는 지역(사업)본부장의 업무추진비 총 건수 및 총액의 공개는 가능) <p>○ 법인·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경영방침, 신용, 경리,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-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
	용역수행정보	<p>○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업체의 기존기술·신공법·시공실적·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</p>
	입찰계약 및 업자 선정 관련 정보	<p>○ 용지(보상, 공급)관련 감정평가업자 선정관련 제출자료 및 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자료</p> <p>※ 공개가능한 법인 등 정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관련 정보·약해,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정보 공개 - 위법·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및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·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 통지서 등은 공개

법 제9조
제1항
제8호

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,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
부서명	소관사항	비공개 대상 정보
<p>미래전략파트 개발사업파트 에너지사업파트 보상분양파트 건축사업파트 주거복지파트</p>	<p>개발사업 정보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부의 토지·주택 등 부동산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·매점매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 ○ 운영계획 수립 자료, 투타심 심의자료, 신규사업 우선순위 결정 자료 등 부동산 투기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자료, 사업 후보지 조사 관련자료 ○ 택지개발사업지구, 산업단지개발사업지구, 신도시 등의 개발 사업지정고시 전의 관련자료 및 예정지구 제안 자료 등 ○ 사업예정지 선정을 위한 조사, 지구지정제안, 협의자료 및 주민공람 공고이전의 개발 계획 등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○ 경기 동향 및 전망분석 내부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○ 재정비촉진사업 관련 총괄사업관리자 업무협약 및 재정비촉진 사업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○ 공공토지비축계획 수립을 위해 수집된 토지수급현황 및 비축대상지 선정 등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